

울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울릉군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지원하고자 한국어 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울릉군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 강사 1명

채용 분야 / 직위	채용인원	예정 직무	채용기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 한국어 강사	1명	·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2025. 3.~10. (8개월간)

2. 접수 및 채용방법

구분	내용
○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5. 2. 26.(수) ~ 2025. 3. 12.(수) 17:00 <15일간> ②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울릉군가족센터(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31) - 이메일접수 : dmh0205@hanmail.net
○ 서류 전형	- 2025. 3. 14.(금) 11시 - 서류 전형(평가표에 의함) 평가 후 개별 통보
○ 면접 전형	- 2025. 3. 19.(수) 14시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25. 3. 21.(금) 10시 - 합격 여부 개별 통보(불합격자는 통보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종사자범죄경력조회여부 후 채용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 자격 기준

구분	자격조건
<p>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 한국어 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 사항 없음

4. 근무조건 및 급여기준

가. 근무기간: 2025. 3. 24. ~ 2025. 10. 27. (8개월간)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급여기준: 2025년 가족사업안내(II)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운영 강사 인건비 기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소정양식)

다. 노인학대범죄전력동의서 및 결격여부조회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라. 채용반환청구서(해당자에 한함)

마. 강사 자격 기준 서류(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이수증, 한국어 교육 경력 확인증,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등)

바. 한국어 교육 관련 경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및 교육확인서 등)

6. 문의

☎ 울릉군가족센터 054-791-0205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는 제외)

*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 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는 파기됨

다. 채용 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채용 분야별로 책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마. 채용신체검사, 결격여부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